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향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55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김지향, 강석주, 김길영,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혜영, 도문열,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소영철, 유정인, 이민석,
이종태, 홍국표, 황철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은 징계 심사 전 의무적 절차이고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해 사실상 의결에 구속력이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자문위 구성 시 민간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원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위원회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2023.7.28.)
- 또한,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행위기준과 관련하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30만원) 및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됨.
-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공정성 및 중립성이 강화되도록 자문위의 구성·운영 규정을 개선하고,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위해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정비함.

2. 주요내용

- 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 위원회 위원에서 공무원, 정당의 당원, 의원을 제외함(안 제22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정비(안 제24조)
- 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개정(별표 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를 “학계·법조계·언론계”로, “행동강령”을 “윤리·행동강령”으로,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를 “공정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을 “정당의 당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위원의 제척·회피)”를“(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를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로 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가. 금전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 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생략)</p> <p>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u>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u></p> <p>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u></p> <p>1. <u>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u></p> <p>2. <u>의원</u></p> <p>3. <u>정당의 당원</u></p> <p>④ <u>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 이 되도록 한다.</u></p> <p>1. <u>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u></p>	<p>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학계·법조계·언론계</u> ----- ----- ----- <u>윤리·행동강령</u> ----- ----- <u>공정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u>-----.</p> <p>③ ----- ----- ----- <u>정당의 당원은</u> ----- ----- -.</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p>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p> <p>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 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p> <p>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p> <p>가. ~ 라. <선 설></p>
<p>비고</p> <p>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다. <선 설></p>

-----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p>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p> <p>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 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p> <p>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p> <p>가. 금전</p> <p>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p> <p>다. 제1호의 음식물</p> <p>라. 제2호의 경조사비</p>
<p>비고</p> <p>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 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칭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p>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은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문서번호

2023101600000014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김지향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

접수일 : 2023.10.16.

회신일 : 2023.10.16.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제22조(구성 및 임기) 및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를 변경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박지영

☎ 02-2180-7952
e-mail : 7magic7@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